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1829호

**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
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재정비)된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4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용산전자상가지 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6월 12일
서울특별시

1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2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(☎02-2133-8380)
용산구청 도시계획과 (☎02-2199-7412)
3. 열람내용
 -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
 - 0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 - 0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 -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 - 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- 나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- 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교통시설 : 신설
 - 1) 주차장 결정(신설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주차장	한강로3가 1와 3필지	-	증) 1,493.5	1,493.5	-	•중복결정 - 공공청사, 주차장

나.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다. 유통 및 공급시설 : 변경

1) 유통업무설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유통업무설비	한강로2가 15일대	119,703.1	감) 4,654.4	115,048.7	건고-제332호 (85.07.31.)	-

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 : 신설

1) 공공청사 결정(신설)조서 : 신설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공공청사	한강로3가 1 외 3필지	-	증) 1,493.5	1,493.5	-	중복결정 - 공공청사, 주차장

■ 건축물의 범위

도면표시 번호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층)	비 고
①	60.0%	600.0%이하	11층 이하	공공시설(취·창업지원센터 등)

마. 방재시설 : 변경없음

바. 보건위생시설 : 변경없음

03.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사항 : 신설

1.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(신설)조서

가.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공공기여 계획

구분	공공기여기준	비고
공공기여에 관한 사항	- 공공기여율 17.5% 이상 ※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(단,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% 상한용적률 적용) ※ 「신산업용도」 30%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	-

0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(변경)조서

-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: 신설(기재생략)

2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건축물 용도계획 : 변경없음

나.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: 변경없음

다. 건축물 높이계획 : 변경없음

라. 건축물의 배치계획 : 변경(기재생략)

3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(기재생략)

4.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(신설)조서

-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㉔ : 신설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㉔	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6	한강로3가 1-1일대	-	감) 3,160.9	3,160.9	-	-

가.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: 신설

구분		계획지침	비고
위치		• 한강로3가 1-1일원	-
면적		• 3,160.9㎡	-
용도지역		• 일반상업지역	-
용도지구		-	-
가구 및 획지		• 획지 : 3,160.9㎡	-
밀도	건폐율	• 60%이하 ※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	-
	용적률	• 기준 250% 이하, 허용 610% 이하, 상한 800% 이하 ※ 「건축법」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·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800% 초과 가능	-
높이		• 100m + α ※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(디자인 특화, 개방형 녹지 확보)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	-

구분		계획지침	비고	
건축물 용도	불허용도	• 장례식장, 공장(지식산업센터 제외) •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•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제외),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-	
	지정용도	• 신산업용도, 공공임대산업시설, 공공임대상가 ※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※ 신산업용도 :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· 소프트웨어 · 디지털 콘텐츠, 연구개발업 등 ※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	전체 연면적의 30% 이상	
	권장용도	•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• 가로활성화 용도 :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, 잡화, 의류,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/ 제1종, 제2종 휴게음식점, 제과점 /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, 서점(1층 바닥면적의 50% 이상,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/20이상 연접 배치) • 제13호의 운동시설 • 신산업용도	-	
건축선	건축한계선	• 청파로 변 및 이면부 : 3m ※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	-	
배치 및 형태	건축물 형태	•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•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•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(캐노피, 아케이드,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)	-	
대지 내 공지 및 통로	공개 공지	공통	• 공개공지 최소 폭 5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9m 이상 확보 •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	-
		개별	• 청파로 변 각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•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• 대중교통보행통로,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	-
	전면공지		• 건축한계선 후퇴부(3m)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	-

구분		계획지침	비고
	공중공공 보행통로	- 청파로 변 조성 ※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	-
	연결브릿지	새창로 1개소 특별계획구역 4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	-
		이면부 1개소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	
	연결브릿지	※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“응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(안)”을 따름 ※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,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※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,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	-
교통처리계획		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	-
공공기여에 관한 사항		- 공공기여율 : 17.5% 이상 ※ 공공기여율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것으로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,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% 상한용적률 적용 ※ 「신산업용도」 30%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- 공공기여 사항 ①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② 주차장 ③ 공공청사(공공시설(취·창업지원센터 등))	-
기타		- 주거비율 : 지상 연면적의 50% 이하(전용 60㎡ 이하, 전세 20% 이상) -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※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근 공용주차장 통합개발 검토(통합개발 허용) - 개방형 녹지 20% 이상 확보 -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 폐지	-

05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②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 : 기계생략 (열람장소 비치)

4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5. 기타사항
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(☎02-2133-838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